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3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(등기)하였으나, 수취인 미지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0일

원주소방서장



- 제 목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- 관련법규 : 가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
나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- 공고기간 : 2026. 8. 10. - 2026. 9. 14.(33일간)
- 공고대상

이름	송달주소	위반사항	반송사유	과태료	가산금
심현철 (구.이현가구빌리지)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가리1길 4-1	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수취인 미지수	3,000,000원	126,000원

5. 공고내역

- 공고 대상자는 **2026. 9. 14. 전까지**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(033-769-1222)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과태료는 현재 체납으로 인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, 매 1개월마다 1.2% 증가산금(최고 72% : 60개월)이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, 상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진민경(033-769-122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끝.